

서울특별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 번호 | 1419 |
|----------|------|

2020년 6월 19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4월 3일, 문장길 의원

2. 회부일자 : 2020년 4월 8일

3. 상정일자

-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0년 6월 19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문장길 의원)

1. 제안이유

- 정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1회용품 사용 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회용품의 사용 감축을 유도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통해 사무실에서의 1회용품컵과 페트병 사용 금지, 개인 텀블러 사용 권장 등의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음.
- 이와 같은 정부 시책에 발맞추어 점점 심각해져 가는 환경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학교에서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과 이를 위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자원 낭비 예방 및 환경보전을 도모하려고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 나.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 하여금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하려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다.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 하여금 5년마다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라.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의 행사 및 회의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제1항)
- 마.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것을 규정 함(안 제7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0년 4월 3일 문장길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419호로 발의되어 2020년 4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정부의 1회용품 사용 감축 시책에 발맞추어 서울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학교가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이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 심각해져가는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2조 제15호에 따르면,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1회용 컵·접시·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1회용 수저·포크·ナイ프, 1회용 봉투·쇼핑백 등¹⁾을 의미합니다.
- 1회용품 사용은 현재 전 세계적인 문제로, 2018년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me)에서는 1회용 비닐봉지 및 플라스틱이 환경 및 건강, 사회와 경제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국가별 사례를 소개하는 등 세계 각국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²⁾.

이러한 흐름에 따라 EU는 2020년까지 식기류(포크, 숟가락, 접시, 빨대 등), 면봉, 풍선막대의 시장출시를 금지하고, 미국은 플라스틱 식기류, 빨대, 젓는 막대의 사용을 제한하며 주·도시별로 1회용 비닐 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등 현재 세계 각국이 1회용품 사용을 제한, 규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회용품(제5조 관련)

1.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1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4. 1회용 수저·포크·ナイ프
5.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외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6. 1회용 면도기·칫솔
7. 1회용 치약·샴푸·린스
8.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2) UNEP(2018). Single-Use Plastic: A Roadmap for Sustainability.

제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표 1] 참조).

[표-1] 세계 각국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및 규제 현황³⁾

| 국가 | 내용 |
|-----|---|
| E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기류, 빨대 등 10대 품목을 선정하고 사용 제한 추진 - 2022년까지 식기류(포크, 숟가락, 접시, 빨대 등), 면봉, 풍선막대 시장출시 금지 |
| 미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도시별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및 플라스틱 식기류, 빨대, 젓는 막대의 사용 제한 추진 - 2022년까지 모든 식당에서 플라스틱 식기류, 빨대 사용 금지(하와이) |
| 캐나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용품 사용감소 전략을 통해 단계별 규제 확대 추진(식품용기, 빨대, 비닐봉투 등) - 2018년 PS 테이크아웃 용기 사용 금지, 2021년까지 일회용 식기류, 빨대, 비닐봉투 사용 전면금지 |
| 영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빨대, 젓는 막대, 면봉의 유통 및 판매 금지 추진 |
| 프랑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1회용 플라스틱컵, 접시 판매 금지 시행 예정 |
| 스페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닐봉투 소비 억제 및 플라스틱 사용 규제 발표 |
| 대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세탁소 포장용 비닐 무상제공 금지, 2030년 모든 상점에서의 1회용 식품용기, 비닐봉투 전면 사용 금지 추진 |

○ 이에 따라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도 2018년에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마련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각 시·도교육청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⁴⁾

이후 환경부는 지난 2019년 11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추가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주요 1회용품(컵, 봉투 등) 사용을 35% 감축하고, 2030년까지 상업 목적으로 제공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 하는 등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표-2] 참조).

3) 환경부의 관계부처 합동(2019.11.22.).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참조.

4) 환경부 공문(2018.06.25.).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 준수 협조요청’.

[표-2] 2019년 환경부 1회용품 줄이기 주요 과제5)

| 분야 | 중점과제 |
|--------------------|----------------------------|
| 1회용품 줄이기 대상 단계적 확대 | • 1회용 컵 사용 감축 및 회수 체계 구축 |
| | • 포장·배달의 1회용 식기류 등 사용 감축 |
| | • 장례식장 등 규제 적용 업종·시설 확대 |
| | • 비닐봉투 사용금지 업종의 단계적 확대 |
| | • 빨대 등 현행 비 규제 1회 용품 사용 감축 |
| 플라스틱 포장재 등 줄이기 | • 택배, 신선배송 등 운송 포장재 감축 |
| | • 제품의 과대포장 및 재포장 근절 |
| 이행 기반 강화 | • 1회용품 생산업계 이행 지원 |
| | • 공공부문 역할 강화 |
| | • 전 국민 참여 촉진 |

○ 특히, 환경부의 2019년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에서는 공공부문 역할 강화를 강조하면서 공공기관이 환경부의 단순 지침이 아니라 훈령 및 예규, 조례 제정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자제를 제도화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표-3] 참조).

[표-3] 환경부의 1회용품 줄이기 관련 공공부문 역할 내용 및 규정 변화6)

| 구분 | 기 존 | 개 선 |
|-------|----------------------------|------------------------------|
| 주요 내용 | 사무실, 회의, 야외행사에서 1회용품 사용 감축 | 정부·지자체 소관 축제, 문화·편의시설 등으로 확대 |
| 규정 | 단순 지침(환경부) | 부처별 훈령·예규, 지자체 조례 |

○ 따라서 동 조례안은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세계적 흐름에 따라 현재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1회용품 줄이기 정책을 기반으로,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

5) 환경부의 관계부처 합동(2019.11.22.)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참조.

6) 환경부의 관계부처 합동(2019.11.22.)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참조.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총칙 규정으로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을, 본칙 규정으로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실태조사(안 제5조), 행사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안 제6조), 교육·홍보(안 제7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을 규정하는 등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법실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2)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검토(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교육감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계획의 내용에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유관기관과의 협력’, ‘교육·홍보의 활성화’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2018년에 ‘「세상을 바꾸는 작은 실천」 추진 계획: 1회용품 줄이기 실천 프로젝트(이하 ‘1회용품 줄이기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가정·학교·기관의 자발적인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운동을 유도함으로써 서울교육 공동체가 환경 폐기물 해결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동 계획에는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운동 홍보 강화’,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 시행’, ‘1회용품 줄이기 아이디어 공모전’, ‘학생중심 환경 지킴이 녹색실천단 운영’ 등이 포함되어 1회용품 줄이기 관련 ‘실천’ 운동에 중점을 둔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표-4〕 참조).

[표-4] 2018년 서울시교육청 1회용품 줄이기 관련 사업 내용

| 과제 | 추진 내용 |
|------------------------|--|
| ①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운동 홍보 강화 | • SNS 홈페이지 등 1회용품 줄이기 실천운동 홍보 |
| | • '1인 1머그컵 운동' 공모사업 추진 |
| | • 1회용품 줄이기 실천 동아리 운영 |
| | • '1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 추진 |
| ②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 시행 | •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 개시 및 준수 |
| | • (본청) 직원용 머그컵 구입 및 우산빗물제거기, 식기세척기, 살균기 등 설치 |
| | • (본청) 꿈틀 카페 1회용품 사용 제한 및 컵보증제 추진 |
| ③ 1회용품 줄이기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 | • UCC 및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
| | • 1회용품 줄이기 실천운동 연계 지도자료 개발 |
| ④ 학생 중심 환경지킴이 녹색실천단 운영 | • 단위 학교별 환경지킴이 녹색실천단 운영 |
| | • 플라스틱 수거 day, 환경보증금(에코머니)제 운영 |
| | • 플라스틱 수거량 맵인 스마트폰 앱(application) 개발·보급 |

○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및 2020년에 '1회용품 줄이기 실천 프로젝트'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지 않고 환경교육 차원에서 관련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는 2019년에 환경부 주관 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 이런 점에서 동 조례안 제4조는 현재 추진 중인 국가 차원의 1회용품 줄이기 정책을 반영하여 향후 서울시교육청이 이와 관련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으로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

○ 한편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에 수립된 「생태전환교육 중장기('20~'24) 발전 계획」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의 내

용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안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5146, 2020.4.10.).

- 그러나 환경교육은 ‘환경교육진흥법’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이며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은 ‘자원재활용법’에 근거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두 사업을 동일하게 추진하는 것은 법률 제정 및 사업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 중장기(‘20~’24) 발전 계획」에서 1회용품 관련 계획을 살펴보면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 관련된 계획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또한 이미 환경부는 2018년에 각 시·도교육청에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 준수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환경부에서 마련한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을 준수할 것과 이와 관련하여 각 기관이 자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으며⁷⁾,

환경부에서도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와 별도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차원에서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실천 중심의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환경교육 계획과 별개로 1회용품 사용 및 제한에 대한 중·장기 계획 및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국가차원의 1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7) 환경부(2018).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 준수 협조 요청’

2. 지난 4월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폐비닐 수거거부 등 문제의 재발장지를 위하여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5.10일)에서 폐기물을 감량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관계부처 합동) 하였습니다.

3. 동 대책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친 생활문화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 적으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실천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기관은 자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7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여 친환경적인 생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 조례안 제4조에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규정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실태조사에 대한 검토(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안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교육감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환경부는 2019년에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1회용 컵, 1회용 접시·용기 등 주요 1회용품에 대한 2018년 사용량을 밝히고 2019년 계획 시행에 의한 감축량도 예상하여 제시하였습니다(〔첨부자료 2〕 참조).

이와 같이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에 대한 기본계획은 궁극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목적인바, 교육청 차원의 기본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의 1회용품 사용량에 대한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동 조례안 제5조는 향후 서울시교육청이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의 1회용품 사용량 및 감축량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기본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 적절한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

○ 한편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학생의 경우 1회용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 제5조에 대해 “삭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5146, 2020.4.10.).

○ 그러나 동 조례안 제9조에서 조례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들은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와 더불어 동 조례안에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에 대한 대상은 학생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전체 구성원에 적용되는 것인바,

동 조항에서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교육·홍보에 대한 검토(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자원 낭비 예방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과 관련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환경부가 2019년에 발표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에 따르면, 현재부터 2022년까지 '1회용품 줄이기'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이에 따라 규제 품목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도 이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에 '1회용품 줄이기 실천 프로젝트'에서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운동 홍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회용품 줄이기 실천동아리 운영, '1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 운영 등을 통해 1회용품과 관련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습니다.
- 이에 동 조항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계획을 기반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
- 한편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기후위기를 포함한 환경교육 강화를 통해 실천력을 강화하는 것이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는 이유로 안 제7조의 교육 및 홍보 내용을 기후위기, 환경오염,

에너지 절약 등에 대한 조항으로 수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셨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5146, 2020.4.10.).

○ 그러나 동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환경교육 문제와는 별개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의 1회용품 사용량을 감축하고 환경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동 조항의 ‘교육·홍보’ 내용도 기후위기, 환경오염 등 전반적인 환경교육의 내용이 아니라 ‘1회용품 줄이기’에 중점을 둔 내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환경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및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별도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동 조항에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과 관련한 교육·홍보 내용을 수정할 필요는 크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참고로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2020년 1월 환경부는 지자체장의 판단 하에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하였는바⁸⁾, 이에 따른 동 조례안의 시행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8) 환경부(2020.1.3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경계 발령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안내.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유관기관과의 협력
3. 교육·홍보의 활성화
4.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교육 행정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행사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을 개최할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재난 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1회용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을 사용 하거나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홍보) 교육감은 자원 낭비 예방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학교 교직원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과 관련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 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